

『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1일

제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엄 상 섭

나. 제안이유

-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
-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(전액, 일부)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토요일 오전 시설 사용시에도 기본사용료 가산금 부과 및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(안 제5조제3항)
-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(전액, 일부)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7조)
 - 시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
-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-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-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

○ 개정된 법률제명 적용(안 제13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문화예술회관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변경하고,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 139조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 외에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
-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